201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○ 이 내용은 201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정리한 것임.

○ 2012. 12월 현재 관계법령과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.

201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1.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	〈신 설〉	ㅇ 수출특화지역 육성 지원 개시 - 1개소, 국고 10억원 * 총사업비 20억원 * 정부보조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	산림자원법률, 임업진흥촉진법률 등 ('13. 1월) 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(042-481-4086)
2. 수입 잣의 WTO 시장접근 물량 운영방식 변경	ㅇ 저율관세(30%)로 수입되는 잣 52.9톤(깐잣 14.89톤) 물량 배정을 수입권 공매로 운영	ㅇ 일정물량에 대해 선착순 실수요자배정으로 변경 - 실수요자배정 35톤(깐잣 9.8톤) - 수입권공매 17.9톤(깐잣 5톤)	산림자원법률, 고시 ('13.1.1) 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(042-481-4086)
3.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·관리	〈신 설〉	ㅇ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해당 수종이 역사적·문화적·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·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원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수종육성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2.12.2) 산림자원과 (042-481-4181)
4. 원목 규격 개정 및 규격별 시장가격 조사 실시	ㅇ 원목 규격에 대해 침엽수, 활엽수별로 재장별 말구지름, 결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품등을 구분 ㅇ 국유임산물 매각시 시가조사 산물이 다량 수요되는 도시 중 국가에 유리한 시장의 도매 시가를 적용 - 현재 지방청별 매월 조사하여 조사자료 공유	ㅇ 원목 규격을 주요 수종별, 활용 용도별, 결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산정 ㅇ 국유임산물 매각시 시가조사 산물이 다량 수요 되는 도시 중 국가에 유리한 시장의 도매 시가를 적용 - 임업진흥원 위탁조사 결과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활용	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('13.1.1) 목재생산과 (042-481-888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5.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	〈신 설〉	ㅇ 입목·죽을 벌채·제재·유통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	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('13.5.24) 목재생산과 (042-481-4204, 8875)
6. 목제품 규격·품질 미표시 벌칙 상향	ㅇ 목재제품 규격·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	ㅇ 목재제품 규격·품질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·보관·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	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('13.5.24) 목재생산과 (042-481-4204, 8875)
7.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	ㅇ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농산어촌 거주자만 설치 가능 ㅇ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설치 가능	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도시 지역에도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편의 및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 가능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3.1.1시행) 목재생산과 (042-481-4201)
8. 국유림 영림단의 운영 및 지원·육성	〈신 설〉	ㅇ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영림단을 조직하여 다음 각 사업을 할 수 있음 - ①조림사업, ②숲가꾸기사업, ③산림병해충방제사업, ④양묘사업, ⑤입목의 벌채·굴취 또는 이식사업 - 산림사업 중 ①조림사업, ②숲가꾸기사업, ③입목의 벌채·굴취 또는 이식사업은 국유림 영림단에 대행, 위탁 시행 할 수 있음 ㅇ 국유림영림단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2.12.2) 목재생산과 (042-481-4187)
9. 임도시설 단가의 변화	o 임도신설 단가 - 간선임도 : 188백만원/km - 작업임도 : 80백만원/km	ㅇ 임도신설 시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재해안전성을 강화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단가 현실화 - 간선임도 : 207백만원/km - 작업임도 : 125백만원/km	'13 예산내역서 ('13.1.1) 목재생산과 (042-481-4275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10. 간선임도 사전 설계비 신규반영	〈신 설〉	ㅇ 겨울철 폭설로 인한 설계 불가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설계비 신설 - 175km, 1,711백만원 * 민유임도 137km, 국유임도 38km * (설계비) 220백만원/km×5.81% - 사전설계비는 2013년 1회 반영, 이후에는 사전설계 노선 설계비 활용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’ 13.1.1) 목재생산과 (042-481-4275)
11. 임도시설 시범단지 지정 및 사업량 지원	〈신 설〉	ㅇ 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지정한 임도 시범사업단지 조성계획 확정(10개소) ㅇ “임도시설 시범단지” 는 조성완료까지 임도 신설 확대 지원(추가지원 실시) - 2013년 지원 : 도(간선 2km, 작업 2km), 지방청(간선 3km, 작업 3km)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’ 13.1.1) 목재생산과 (042-481-4275)
12. 사유림 매수단가 인상	ㅇ 산림경영임지 실행 매수단가 600만원/ha	ㅇ 산림경영임지 실행 매수단가 650만원/ha (50만원/ha, 8.3% 인상)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’ 13. 1. 1.)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5, 4098)
13.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발급	〈신 설〉	ㅇ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 -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함	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(’ 12.7.26) 산림휴양문화과 (042-481-4216)
14.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	〈신 설〉	ㅇ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 - 숲해설가 전문과정(170시간이상),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(210시간이상),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(130시간 이상)	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(’ 12.7.26) 산림휴양문화과 (042-481-421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15.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과정별 평가	〈신 설〉	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받은 교육생은 각 과정별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검정평가에 합격해야 함	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 기준 (산림청 고시 제2012-45호, '12.6.15) 산림휴양문화과 (042-481-4216)
16.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	〈신 설〉	ㅇ 국고금을 융자받아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- (현행) 숲가꾸기 등 7개 → (개정안) 사설 수목장림 조성 등 8개	산림사업종합자금지침 산림휴양문화과 (042-481-4211)
17. 품목별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효율화 (수실류,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)	ㅇ 수실류 등 생산기반 조성 - 밤나무 노령목 관리 - 수실류 등 지상방제 장비 -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- 친환경 밤 생산지원 -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ㅇ 대추 생산기반 조성 ㅇ 떫은감 생산기반 조성 ㅇ 조경수 생산시설 지원	ㅇ 수실류,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- 밤나무 노령목 관리 -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- 친환경 방제장비 - 수실류 등 생산 장비 - 수실류 등 생산시설 -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 ('13.1.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6)
18. 밤나무 토양개량 단가 현실화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	ㅇ 밤 토양개량 - 총사업비 : 282천원/ha ㅇ 적용 대상품목 확대 〈신 설〉	ㅇ 밤 토양개량 - 총사업비 : 504천원/ha ㅇ 적용 대상품목 확대 - 밤 이외 수실류 : 756천원/ha (밤의 1.5배)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('13.1.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6)
19. 산양삼 품질검사비용 신규지원(산양삼 생산 과정확인사업)	〈신 설〉	o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200천원/건 이내 신규 지원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('13.1.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9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20. 대규모 사업추진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(공모사업)	ㅇ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,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임업인 임의로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 실시	ㅇ 사업추진시 사전에 사업설계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추진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('13. 1. 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9)
21.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 총사업비 집행비율 현실화	ㅇ 기반조성비 60%이상, 종자·묘목구입비 10%이내	ㅇ 기반조성비 40%이상, 종자·묘목구입비 30%이내,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('13.1.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9)
22.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별 국고지원율 차별화	ㅇ 지원조건 - 국비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	ㅇ 지원조건 - (공모) 국비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 - (비공모) 국비 20%, 지방비 20%, 융자 20%, 자부담 40%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('13.1.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9)
23. 임산물생산기반정비 (산림복합경영)	ㅇ 모델유형별 지원 - 단기소득중심형 - 목재생산중심형 - 복합산지관리형	ㅇ 모델유형별 지원기준 삭제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('13. 1. 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9)
24.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자격 및 요건	ㅇ 시설·장비 활용에 면허·인증·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	ㅇ 시설·장비 활용에 면허·인증·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(굴삭기 면허의 경우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·비속·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조건을 구비하여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함. 단 후순위로 함)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('13.1.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5)
25. 임산물유통 구조개선	ㅇ 임산물(곶감) 저장건조시설 지원	〈폐 지〉	'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('13. 1. 1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7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26. 수목원 조성(변경) 계획의 자동 승인	○ 수목원 조성(변경) 계획의 승인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(규칙 별지서식에 별도 기재)	○ 수목원 조성(변경) 계획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, 승인된 것으로 의제 (자동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)	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('13. 4월)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8)
27.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 폐지	○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, 기간 경과시 재신청	○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유효기간 폐지	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('13. 4월)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8)
28. 개발제한구역내 '사방시설 설치시' 부담금 면제조치	○ 부과대상	○ 면제대상	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사태방지과 (042-481-4271)
29.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	〈신 설〉	○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·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보조한 상시 관리체계인 '산사태현장예방단' 운영	산림보호법 산사태방지과 (042-481-8844)
30.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시 청문 실시	○ 청문 없이 회복 명령	○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시 청문 실시	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('13. 4월)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8)
31.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	○ 금지구역 3km	○ 금지구역 2km로 축소 ☞(참고) 「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7조	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('12. 12.6월)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076)